

# 2024 내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대상 기간: 2024.1~2024.12. (2024학년도)
- 2 서면 및 실지 감사 기간: 2025.1.6.(월)~1.17.(금)
- 3 감사 범위: 직제표 상 전체 부서 행·재정 업무 전반
- 4 감사 인원: 총 4명(이정덕교수, 류시영교수, 정혜령과장, 김민호대리)
- 5 감사 결과
  - 가. 형태별 건수

구분	전년도 감사 지적 처분사항 미이행	행정부문	재정부문	비고
지적건수	0	2	2	

나. 전년도 내부감사 지적사항 처분에 대한 미이행 : 미이행 사항 없음

## 다. 세부 지적사항 및 처분(안)

지적 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책임시수 미달 교원의 후속조치 규정 마련 [교무처(교무과)]	<p>현재 「교원 책임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 제4조(책임 시수)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강의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책임시수가 미달하는 최초 학기에 대해 본 규정과 같이 다음 학기에 보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됨.</p> <p>이는 사실상 교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보충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그 한계가 명확함. 특히 책임시수 미달 교원이 최근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규정을 개정할 경우 '2학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더욱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교원의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교원 책임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 제4조(책임시수) 제3호</p>	<p>○ 개선 이수학점 감소(140→130), 교원시수 증가(9→12), 폐강 조건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 제4조 1항 3호에 대해 개정(조항 추가)될 수 있도록 함</p> <p>○ 권고 교원 책임 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대하여 2019년 제정 이후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인 보완 검토 필요</p>
해피수업만들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 규정 삭제 및 익명성 [교무처(교무과)]	<p>「학사운영 규정」 제109조(해피수업만들기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해피수업만들기 제도'는 현재 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 온라인서비스에 킷메뉴로 제공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님. 2024년에는 게시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일명 '에브리타임' 등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SNS 등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p>	<p>○ 개선 해당 규정 제109조 2항 4호 및 해당 세칙 제2조 3항 4호에 대해 '수업과</p>

지적 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p>하는 대학생들의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그인 등으로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p> <p>또한 현재 규정에서는 제2항 제4호에 사실상 ‘기타 항목’이 존재하여 수업 이외에도 거의 모든 것을 게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최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통한 환류 체계 구축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p> <p>따라서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서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피수업만들기 운영 세칙」 제2조 제3항 제4호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접근성을 지금보다 개선하되 익명성을 병자하여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담당 직원이 우선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게시글에 수업이 지적된 교수에 대한 반론권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해피수업만들기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p> <p><b>「학사운영 규정」 제109조(해피수업만들기 제도)</b></p>	<p>관련된’ 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함</p> <p>○ 권고 학생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익명성 보장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피수업만들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고 적극적인 관리 필요</p>
<p>구매절차 개선 [총무처(총무과)]</p>	<p>[교무처 기안문] 38155-1121-20240025(2024.01.10.). 제목 [대학혁신지원사업]2024학년도 강의실 일체형 수강용 책걸상 교체 시행건 관련하여 납품업체 A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음.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본교 물품 구매.관리 규정 제13조(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23 수강용 책상 및 의자 납품 업체 선정’ 입찰건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p> <p>계약 과정에서 특정 제품.업체 신청사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 및 구매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함.</p> <p>구매계약의 예상 금액이 최초 입찰/구매 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존 계약 건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신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됨.</p> <p>부득이하게 기존 단가 계약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연도에 책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약 및 구</p>	<p>○ 권고 수의계약 범위 (20,000,000원)를 초과하는 비품의 경우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한 계약 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p>

지적 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p>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p> <p>계약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소액 수의계약 범위(20,000,000원, VAT 별도)를 초과하는 비품의 경우 신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p> <p>이를 통해 상호 의견 충돌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 물품구매·관리 규정 제13조(수의계약) 제1항 제2호 - 국가계약법 제26조</p>	
<p>출장여비 규정 관련 개선 [산학협력단] [동북아경제연구원]</p>	<p>산학협력단 회계관련 서류 나.예금거래내역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내용 및 우리은행 1005201172538 계좌의 기재내용 중 2024년 4월 4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총 15건, 120,800원의 택시이용 기록을 확인했고, 동북아경제연구원 발주기관 운영지침상 출장 여비로 택비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함.</p> <p>그러나 한라대학교 출장여비규정에 의하면 출장기간중의 현지교통비는 일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의 택시비는 지급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이나 국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서도 택시비 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출장여비규정에 명확하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음.</p> <p>이에 출장비 지급에 대하여 사업단에서는 대학 규정에 의하지 않고 발주기관 운영지침에 의할 경우 내부지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한라대학교 출장여비규정 또는 연구비관리규정에 택시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교직원의 출장 및 연구활동에 혼란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출장여비규정」</p>	<p>○ 개선</p> <p>동북아경제연구원에서는 발주기관 운영지침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출장여비규정을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교직원의 출장 및 연구활동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함</p>